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칙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준법지원팀	1차	2020.06.01

1. 목 적

이 규정은 효성티앤씨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회사 및 회사의 경영권이 미치는 계열사의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2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3.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3.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3.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준법지원인으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칙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준법지원팀	1차	2020.06.01

5.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5.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5.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 5.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5.4 기타 경쟁법 준수를 위하여 이사회(경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5.5 자율준수 실태 및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해 이사회(경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

6.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6.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 6.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7.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7.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7.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7.3 자율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 7.4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7.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7.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 7.7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7.8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경영위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칙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준법지원팀	1차	2020.06.01

회) 보고

7.9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7.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9. 회사의 지원

9.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9.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10. 전담부서

자율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준법지원팀으로 하며, 담당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11. 의무

11.1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각 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11.3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자율준수편람

12.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칙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준법지원팀	1차	2020.06.01

12.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2.3 최소 연 1회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모니터링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내부고발시스템의 운영

회사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고발시스템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되는지 감시하며, 특히 고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15.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5.1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15.2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6.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6.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사규에 따른다.

16.2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칙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준법지원팀	1차	2020.06.01

을 요구할 수 있다.

17. 문서관리

- 17.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17.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17.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18. 운영성과 평가

- 18.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18.2 운영성과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9.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06월 01일 개정, 시행한다.